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중 열람 요건 강화 등〉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78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중 열람등 요건 강화	4
2.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근거 마련 등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건영의원 등 21인
2. 제 안 일 : 2024. 9. 19.
3. 회 부 일 : 2024. 9.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보호·보존하고 공공에 공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됨.

그러나 최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남용되면서 비밀 지정 기록물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대통령기록관이 설치된 이래로 총 17건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최근 2년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6차례나 이뤄짐. 이로 인해 비밀 지정 대통령기록물 내용 일부가 공개돼 대통령기록물이 정치적 쟁점마다 악용되고 있음.

또한 대통령기록물 생산 주체인 전직 대통령과 그 유족에 의한 열람 요건이 수사·사법기관의 열람 요건보다 까다로워 법 취지에 따라 기록물을 많이 생산하는 정부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법기관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고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 의한 지정 대리인 심사 기간을 명확히 하고, 대리인에 의한 열람 범위를 제한하거나 축소할 수 없도록 해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 의한 열람권을 보장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의결 절차를 거쳐 영장을 발부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제2호).

나. 대통령기록관의 장 또는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의 범위와 방법 등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도록 해 기존 대통령기록관 직원만 열람 가능하던 것을 대통령기록관의 장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4항제3호).

다.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이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보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및 제18조제6항 신설).

라. 누구든지 유고시 대리인 등이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
물의 범위, 열람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축소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8조7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중 열람등 요건 강화

개정안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중 예외적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작 등이 허용되는 요건 중, ①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할 때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② 대통령기록관의 직원뿐만 아니라 “대통령기록과의 장”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 ~ ③ (생략) ④ 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 (현행과 같음)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u>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u>

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u>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 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u> ⑤ ~ ⑥ (생략)	<u>수의 찬성의결 절차를 거쳐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u> 다만, 관찰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u>대통령기록관의 장 또는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u> 다만, 열람의 범위, 방법 등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	---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함)에 의하면 대통령은 15년의 범위에서 일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함)을 정할 수 있음¹⁾.

1)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이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2.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3. 정부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또한, 보호기간 내에는 ①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②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및 ③대통령 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하 “열람등”이라 함)이 허용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음.

<보호기간 중 열람등이 가능한 예외 사유>

구분	내용
①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②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단,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 외교관계·국민경제 안전 저해하는 경우 제외)
③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개정안은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할 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보호기간 중 열람등이 가능한 요건을 강화하고, 대통령 기록관의 장도 필요

-
4.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5.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6.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 ② 보호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록물별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지정하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전까지 지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보호기간은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3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한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등을 가능하게 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보호기간 예외 사유 비교>

현행	개정안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 제시	관할 고등법원장이 <u>국회재적의원</u>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의결 거쳐 발부한 영장 제시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대통령기록관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u>대통령기록관의 장</u> 및 직원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단 직원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승인 필요)

다만, 개정안 검토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관할 고등법원장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영장을 발부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에 국회가 개입하여 사법부의 권한을 제약하거나 「대한민국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견제와 균형 원칙에 있어 합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17조제4항제3호는 대통령기록관의 직원이 열람등을 하기 위해서는 열람의 범위, 방법 등에 대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²⁾.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정기록물의 직원 열람은 ‘지정기록물의 적극적 보호’를 보장하는 법 취지에 따라 기록물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실무 업무로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원이 아닌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본인 승인으로 열람할 경우 적절성, 신뢰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유고시대리인등’³⁾ 지정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유고시대리인등’ 지정을 위한 심의기간을 단축하며, ‘유고시대리인등’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등을 제

2) 참고로, 현행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제10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소속 직원에게 열람등을 승인해야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업무
 - 1의2. 법 제11조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업무
 - 1의3. 법 제15조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보안 및 재난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만료에 따른 보호조치 해제업무
 3. 법 제1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공 및 자료제출에 관한 업무
 4. 법 제18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하 “평시대리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이하 “유고시대리인등”이라 한다)이 열람 등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편의제공 업무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보호조치 해제업무
 6.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과 그 보존매체에 대한 상태검사나 상태검사 결과 복원 또는 보존매체 수록 등에 관한 업무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른 서고 배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수점검에 관한 업무
- 3) 전직 대통령이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전직 대통령 가족의 추천을 받아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대리인과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지정한 대리인을 의미함.

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등) ① 전직 대통령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당선인 및 대통령 재임 시 생산·접수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편의 제공에 관한 협의의 진행상황 및 편의 제공의 내용 등을 문서로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열람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 이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은 제외한다. 3. 사본·복제물로 대통령기록물을 제공받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는 것 ② 전직 대통령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하기 위하여 <u>대리인</u>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평시대리인”이라 한다)</u> -----. ③ -----

령이 사망이나 그 밖에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미리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 대통령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리인(전직 대통령이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지정하거나 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 등이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범위, 열람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 관련 조문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10조의6(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 ①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유고시대리인등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요청서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요청서에는 추천 목적,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시대리인-----

<삭 제>

⑤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제3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유고시대리인등”이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유고시대리인등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 관련 조문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10조의6(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유고시대리인등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전직 대통령의 가족과 지정된 유고시대리인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45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직 대통령과 대리인 등의 열람 방법·절차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열람에 대한 보안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고시대리인등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전직 대통령의 가족과 지정된 유고시대리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유고시대리인등이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범위, 열람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축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
-----전직 대통령, 평시대리인, 유고시대리인등의 열람 방법·절차, 제1항제2호에 따른 열람에 대한 보안대책, 제5항에 따른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요청의 방법·절차, 제6항에 따른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결과 통보-----

-----.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하면 전직대통령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내에 대통령당선인 및 대통령 재임 기간에 생산·접수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거나 사본·복제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대리인(이하 “평시대리인”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고 평시대리인은 전직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열람범위를 보장받음.

한편, 전직 대통령이 사망이나 의식불명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법」 및 동법 시행령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유고시대리인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유고시대리인등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45일 내에 지정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4)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10조의6(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 ①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유고시대리인등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요청서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요청서에는 추천 목적,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제1항에 따라 유고시대리인등을 추천하는 경우 전직 대통령의 가족 간 합의에 따라 1명을 추천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추천하되, 같은 순위의 사람이 여럿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추천한다.

1. 배우자
2. 직계혈족
3. 형제자매
4.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 전직 대통령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5. 배우자의 직계혈족 중 전직 대통령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6.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전직 대통령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유고시대리인등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전직 대통령의 가족과 지정된 유고시대리인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45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유고시대리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유고시대리인등을 추천한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추천을 철회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경우
3.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유고시대리인등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그 밖에 유고시대리인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종류나 위반의 내용·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지정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 절차>

전직 대통령 유고 상황	대리인 지정 절차
의식 불명 등 사유	가족 추천 → 전문위원회 심의 → 대통령기록관장 지정
사망	대통령기록관장 지정

또한, 유고시대리인등이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범위, 열람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은 유고시대리인등의 열람범위, 방법 등을 평시대리인보다 제한하고 있음.

<열람권자 및 열람방법에 따른 열람범위⁵⁾>

구분		전직 대통령 · 평시대리인	유고시대리인등
방문 열람	일반	○	○
	지정	○	△(예외적 허용)
	비밀	○	×
온라인 열람	일반	○	×
	지정	×	×
	비밀	×	×
사본·복제물 제공	일반	○	○
	지정	○	△(예외적 허용)
	비밀	○	×

5)

< 참고 : 대통령기록물의 유형별 분류 >

- ▶ **(일반기록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기록물로 대국민서비스 가능(공개·부분공개·비공개로 구분)
- ▶ **(비밀기록물)**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생산된 기록물
- ▶ **(지정기록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통령이 퇴임 전 보호기간을 별도로 지정한 기록물(1~15년, 민감한 사생활 정보는 30년 보호)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따른 “유고시대리인등”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추천하는 대리인의 지정 결과를 30일 내에 통보하도록 하며, 누구든지 유고시대리인등이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범위, 열람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유고시대리인등의 대통령기록물 열람권 제한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 검토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전직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지정된 평시대리인과 그렇지 않은 유고시대리인등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열람권을 보장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유고시대리인등의 열람범위·방법 등을 대통령령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2020년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⁶⁾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전직 대통령 유고 시 대리인과 전직 대통령 간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되었음⁷⁾.

6) 의안번호 2101047, 2020.06.26. 제출, 2020.11.19. 본회의 의결, 2020.12.08. 공포

7) 제21대 국회,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록, p62

둘째, 안 제6항은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 심의 기간을 현행 시행령상 “45일(최대 90일)”에서 “30일(최대 60일)”로 단축하고 있는데, 해당 기간이 적정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⁸⁾.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전직 대통령의 열람은 재임 당시 생산·접수한 기록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며, 지정기록물 제도는 민감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누락 없는 이관을 보장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이므로 전직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족이 추천한 대리인에게 전직 대통령과 동일하게 비밀·지정기록물 등에 대한 열람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7

8)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현재 유고시대리인등을 지정할 때 국가정보원 신원조사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최소 30일이 소요되므로 60일 내에 유고시대리인 지정을 완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임.